

2023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사업 대행 협약서(안)

2023년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사업의 위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함양군수를 “갑” 이라 하고 (이하 “갑” 이라 칭한다.) 함양군 산림조합장을 “을” 이라 하여(이하 “을” 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이 대행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로 질 좋은 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기간) 협약 기간은 2023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되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재협의 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상 및 헬기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별도의 협약기간 변경 없이 순연되는 날을 기간으로 한다.

1. “갑” 과 “을” 의 상호간 협약이 이루어 졌을 때
2. “갑” 과 “을” 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 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할 때

제3조(사업비) “갑” 은 대행 사업에 따른 사업비(방제보조금) 118,094,000원을 선금 지급하며 “을” 이 사업 완료 후 정산지급한다.

제4조(작업방법) “을” 은 대행 받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사업 시행에 따른 작업인부에 대하여는 작업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사전 실시하여 작업에 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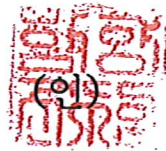
제5조(천재지변 등) “을” 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갑” 과 체결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 은 “갑” 에게 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내용의 해석) 본 협약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무 이행) “갑”과 “을”은 위 협약서에 의하여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하고 협약사항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하고 협약사항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통을 작성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6월

“갑” 함양군수



“을” 함양군산림조합장

